|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침해 분쟁안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    (2016년 1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76회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에서 통과한 《최고인민법원의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침해 분쟁안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 등 지식재권권 사법해석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허권침해 분쟁안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유관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재판실무를 결부시켜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권리요구서에 2가지 항목이상의 권리요구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피소된 침해자가 그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기소의 근거로 한다는 권리요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소장에 이에 대해 기재가 되지 않았거나 기재가 불분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석명 후에도 권리자가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2조** 권리자가 특허침해 소송 중 주장하는 권리요구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부터 무효선고를 받은 경우, 특허권침해 분쟁안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무효인 권리요구에 근거한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상술한 권리요구의 무효를 선고한 결정이 발효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명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특허 권리자가 별도로 기소할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본 조 제2관에서 말하는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계산한다.  **제3조** 특허법 제26조 제3관 및 제4관을 명백히 위반하여 설명서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 용도로 쓰일 수 없고, 또한 본 해석 제4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이 이로 인해 선고무효가 청구된 경우, 특허권침해 분쟁안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중지할 것을 판결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특허권에 대하여 선고무효청구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요구 명시된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 중의 문법, 문자, 구두점, 그래픽, 부호 등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영역의 일반 기술자들이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해에 근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에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경우, 권리요구와 독립된 서문부문, 특징부분 및 권리요구에 종속하는 인용부분과 제한부분에 기재된 기술특징은 모두 제한적인 작용을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관련특허와 분할출원 관계가 존재하는 기타특허 및 그 특허심사자료와 발효된 특허수권 확정판결문서를 활용하여 관련 특허의 권리요구를 해석할 수 있다.  특허심사자료는 특허심사, 재심, 무효절차 중 특허 신청인 또는 특허 권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작한 심사의견통지서, 회담기록, 구두심리기록, 유효한 특허재심요청 심사결정서 및 특허권 무효선고 심사결정서 등을 포함한다.  **제7조**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폐쇄식 조합물 권리요구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초하에 기타 다른 기술특징을 추가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추가된 기술특징이 불가피한 통상적 수량의 불순물에 속할 경우는 제외된다.  전 관에서 말하는 폐쇄식 조합물의 권리요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약 조합물 권리요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기능적 특징은 구조, 성분, 단계, 조건 혹은 그들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그 발명 중 생긴 기능 또는 효과를 통해 한정된 기술특징을 가리킨다. 다만, 이 영역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요구를 읽고 즉시 직접 및 명확하게 상술한 기능 또는 효과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설명서 및 그림 참조에 기재된, 전 관에서 기능 또는 효과를 구현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기술 특징과 비교하여,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에 상응하는 기술특징이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수단으로써,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같은 효과를 내며, 또한 해당 영역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침해로 피소된 행위 시, 창조적인 연구 없이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기능적 특징이 서로 같거나 동일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권리요구 중 사용환경특징에 의해 한정되는 사용환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요구 중 제조방법으로 제품을 경계짓는 기술특징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제조방법과 다르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방법권리요구에 기술단계의 순서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역 일반 기술자가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를 통해 해당 기술단계를 특정 순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을 직접 및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절차 순서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해 한정적 작용을 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요구는 “적어도”, “초과하지 않는” 등 용어를 사용하여 수치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또한 해당 영역의 일반 기술자들이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를 읽은 후, 특허기술방안이 특별히 해당 용어를 강조하여 기술특징의 한정적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권리자가 다른 수치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자가, 특허 신청인 및 특허 권리자의 특허수권 확인절차 중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에 대한 한정축소 수정 또는 진술이 명확하게 부정됨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수정 또는 진술이 기술방안의 포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외관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피소된 권리침해 발생시, 수권받은 외관 디자인이 같거나 또는 비슷한 종류 제품 디자인 범주에 속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디자인 범주가 비교적 클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디자인 간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디자인 범주가 비교적 작을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디자인 간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다 쉽게 인식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완성제품의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과 그 중 한 부분의 외관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조립관계가 단일한 부품제품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조립상태에서의 외관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험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각 부품 간 조립관계가 없거나 조립관계가 단일하지 않은 부품제품의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전체 개별부품의 외관 디자인과 모두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단독 부품의 외관 디자인 보다 부족한 외관 디자인이거나 또는 같지 않고 유사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제품 상태가 변하는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상태가 변하는 그림으로 각종 사용상태를 표시해주는 외관 디자인과 모두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한 종류의 사용상태하에서 외관 디자인이 결여되거나 또는 같지 않고 유사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자가 특허법 제13조에 의거 발명특허 신청공포일부터 권리부여공고일 기간에 그 발명을 실시한 단위 또는 개인이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된 특허 허가 사용료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발명특허 신청공포 시, 신청인이 청구한 보호범위와 발명특허 권리부여 공고시의 특허권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된 기술방안이 모두 상술한 2가지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전 관에서 말한 기간 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소된 기술방안이 단지 그 중 1가지 범위에만 포함될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전 관에서 말한 기간 내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수권공고 후 특허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본 조 제1관에서 말하는 기간 내 이미 타인이 제조, 판매, 수입한 제품을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 판매 의 청약 및 판매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타인이 특허법 제13조에 규정된 적정 비용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서면으로 승낙 지급한 경우, 권리자가 상술한 사용, 약속판매 및 판매행위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19조** 제품매매계약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에 속하는 판매에 속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가공 및 처리하여 획득한 후속제품에 대하여 재 가공 및 처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의 “사용은 해당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련제품 계열이 특히 특허를 실시하는 재료, 설비, 부품, 중간재 등에 쓰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특허 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생산경영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특허권침해 행위를 실시하고, 권리자가 그 제공자의 행위가 민법전 제1169조 규정에 속하는 타인이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관련제품 및 방법이 특허권을 받은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특허 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생산경영목적으로 타인에게 특허권침해의 행위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리지가 그 유도자의 행위가 민법전 제1169조에 규정된 타인에게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피소된 침해자가 주장하는 현존 기술의 항변 또는 디자인항변에 대해, 인민법원은 특허 신청일에 시행한 특허법에 따라 현존 기술 또는 현재 디자인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종전 안건과 관련된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되고, 피소된 침해자가 그 기술방안 또는 외관 디자인으로 특허권을 부여 받아 안건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24조** 추천성 국가 및 업계 또는 지방표준이 필요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피소된 침해자가 해당표준의 실시로 인해 특허 권리자 허가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가지고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항변으로 삼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추천성 국가 및 업계 또는 지방표준이 필요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특허 권리자 및 피소된 침해자가 해당 특허의 실시허가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특허 권리자가 고의로 그 표준제정 중 승낙한 공평, 합리, 무차별의 허가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특허실시허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또한 피소 침해자는 협상 중 명백한 과실이 없을 경우 권리자의 표준실시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본 조 제2관에서 말하는 실시허가조건은, 특허 권리자 및 피소된 침해자가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충분한 협상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상술한 실시허가조건을 확정할 때에는 공평, 합리, 무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특허의 혁신 정도 및 그 표준의 작용과 표준에 속한 기술영역 및 표준성분, 표준실시의 범위와 관련된 허가조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가 실시표준 중 특허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사용, 약속판매 또는 판매에 대하여 특허 권리자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된 특허침해제품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지(不知)하고, 또한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경우, 권리자가 상술한 사용, 약속판매 및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그 해당제품의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 조 제 1관에서 말하는 부지(不知)라는 것은 실제로 모르고 또한 알 수 없었을 경우를 가리킨다.  본 조 제1관에서 말하는 합법적 출처는 합법적인 판매경로 및 통상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판매방법으로 취득한 제품이다. 합법적 출처에 대해 사용자 및 승낙한 판매자 또는 판매자는 거래관습에 부합되는 관련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권리자가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판결명령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단 국가이익 및 공공이익의 고려에 기반하여,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피소행위를 중단하도록 판결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다만 그 상응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권리자는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 제1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자에게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이미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의 초기증거를 제공하였으나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를 주요 침해자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침해자에게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침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 권리자 및 침해자는 법에 의거 특허침해의 배상금액 또는 혹은 배상계산방법을 약정하고, 또한 특허침해소송 중 해당 약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특허권 무효를 선고한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고 하기 전 인민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권침해의 판결 및 화해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심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판결 및 화해서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특허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고, 전 관에서 말한 판결 및 화해서를 계속 집행하기를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침해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반(反)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발효한 판결로 특허권 무효를 선고한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특허 권리자는 계속적 집행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끼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를 선고한 결정이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할 경우, 인민법원은 전 관에서 말한 판결 및 화해서에 근거하여 상술한 반(反)담보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 법정기한 내 특허권무효를 선고한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후 발효된 심판이 해당 결정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따라 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고 하기 전 인민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권침해의 판결 및 화해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의거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전 인민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침해의 판결 및 화해서 종결집행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종결집행을 판결하여야 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과 본 해석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  **若干问题的解释（二）**  　　（2016年1月2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76次会议通过，根据2020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23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等十八件知识产权类司法解释的决定》修正，2021年1月1日起施行）  　　为正确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有关法律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解释。  **第一条** 权利要求书有两项以上权利要求的，权利人应当在起诉状中载明据以起诉被诉侵权人侵犯其专利权的权利要求。起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人民法院应当要求权利人明确。经释明，权利人仍不予明确的，人民法院可以裁定驳回起诉。  **第二条** 权利人在专利侵权诉讼中主张的权利要求被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无效的，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的人民法院可以裁定驳回权利人基于该无效权利要求的起诉。  　　有证据证明宣告上述权利要求无效的决定被生效的行政判决撤销的，权利人可以另行起诉。  专利权人另行起诉的，诉讼时效期间从本条第二款所称行政判决书送达之日起计算。  **第三条** 因明显违反专利法第二十六条第三款、第四款导致说明书无法用于解释权利要求，且不属于本解释第四条规定的情形，专利权因此被请求宣告无效的，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的人民法院一般应当裁定中止诉讼；在合理期限内专利权未被请求宣告无效的，人民法院可以根据权利要求的记载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  **第四条** 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中的语法、文字、标点、图形、符号等存有歧义，但本领域普通技术人员通过阅读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可以得出唯一理解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唯一理解予以认定。  **第五条** 在人民法院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时，独立权利要求的前序部分、特征部分以及从属权利要求的引用部分、限定部分记载的技术特征均有限定作用。  **第六条** 人民法院可以运用与涉案专利存在分案申请关系的其他专利及其专利审查档案、生效的专利授权确权裁判文书解释涉案专利的权利要求。  　　专利审查档案，包括专利审查、复审、无效程序中专利申请人或者专利权人提交的书面材料，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作的审查意见通知书、会晤记录、口头审理记录、生效的专利复审请求审查决定书和专利权无效宣告请求审查决定书等。  **第七条** 被诉侵权技术方案在包含封闭式组合物权利要求全部技术特征的基础上增加其他技术特征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技术方案未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但该增加的技术特征属于不可避免的常规数量杂质的除外。  前款所称封闭式组合物权利要求，一般不包括中药组合物权利要求。  **第八条** 功能性特征，是指对于结构、组分、步骤、条件或其之间的关系等，通过其在发明创造中所起的功能或者效果进行限定的技术特征，但本领域普通技术人员仅通过阅读权利要求即可直接、明确地确定实现上述功能或者效果的具体实施方式的除外。  与说明书及附图记载的实现前款所称功能或者效果不可缺少的技术特征相比，被诉侵权技术方案的相应技术特征是以基本相同的手段，实现相同的功能，达到相同的效果，且本领域普通技术人员在被诉侵权行为发生时无需经过创造性劳动就能够联想到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相应技术特征与功能性特征相同或者等同。  **第九条** 被诉侵权技术方案不能适用于权利要求中使用环境特征所限定的使用环境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技术方案未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第十条** 对于权利要求中以制备方法界定产品的技术特征，被诉侵权产品的制备方法与其不相同也不等同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技术方案未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第十一条** 方法权利要求未明确记载技术步骤的先后顺序，但本领域普通技术人员阅读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后直接、明确地认为该技术步骤应当按照特定顺序实施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步骤顺序对于专利权的保护范围具有限定作用。  **第十二条** 权利要求采用“至少”“不超过”等用语对数值特征进行界定，且本领域普通技术人员阅读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后认为专利技术方案特别强调该用语对技术特征的限定作用，权利人主张与其不相同的数值特征属于等同特征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三条** 权利人证明专利申请人、专利权人在专利授权确权程序中对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的限缩性修改或者陈述被明确否定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修改或者陈述未导致技术方案的放弃。  **第十四条** 人民法院在认定一般消费者对于外观设计所具有的知识水平和认知能力时，一般应当考虑被诉侵权行为发生时授权外观设计所属相同或者相近种类产品的设计空间。设计空间较大的，人民法院可以认定一般消费者通常不容易注意到不同设计之间的较小区别；设计空间较小的，人民法院可以认定一般消费者通常更容易注意到不同设计之间的较小区别。  **第十五条** 对于成套产品的外观设计专利，被诉侵权设计与其一项外观设计相同或者近似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设计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第十六条** 对于组装关系唯一的组件产品的外观设计专利，被诉侵权设计与其组合状态下的外观设计相同或者近似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设计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对于各构件之间无组装关系或者组装关系不唯一的组件产品的外观设计专利，被诉侵权设计与其全部单个构件的外观设计均相同或者近似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设计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被诉侵权设计缺少其单个构件的外观设计或者与之不相同也不近似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设计未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第十七条** 对于变化状态产品的外观设计专利，被诉侵权设计与变化状态图所示各种使用状态下的外观设计均相同或者近似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设计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被诉侵权设计缺少其一种使用状态下的外观设计或者与之不相同也不近似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设计未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第十八条** 权利人依据专利法第十三条诉请在发明专利申请公布日至授权公告日期间实施该发明的单位或者个人支付适当费用的，人民法院可以参照有关专利许可使用费合理确定。  　　发明专利申请公布时申请人请求保护的范围与发明专利公告授权时的专利权保护范围不一致，被诉技术方案均落入上述两种范围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告在前款所称期间内实施了该发明；被诉技术方案仅落入其中一种范围的，人民法院应当认定被告在前款所称期间内未实施该发明。  发明专利公告授权后，未经专利权人许可，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销售在本条第一款所称期间内已由他人制造、销售、进口的产品，且该他人已支付或者书面承诺支付专利法第十三条规定的适当费用的，对于权利人关于上述使用、许诺销售、销售行为侵犯专利权的主张，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九条** 产品买卖合同依法成立的，人民法院应当认定属于专利法第十一条规定的销售。  **第二十条** 对于将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进一步加工、处理而获得的后续产品，进行再加工、处理的，人民法院应当认定不属于专利法第十一条规定的“使用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第二十一条** 明知有关产品系专门用于实施专利的材料、设备、零部件、中间物等，未经专利权人许可，为生产经营目的将该产品提供给他人实施了侵犯专利权的行为，权利人主张该提供者的行为属于民法典第一千一百六十九条规定的帮助他人实施侵权行为的，人民法院应予支持。  明知有关产品、方法被授予专利权，未经专利权人许可，为生产经营目的积极诱导他人实施了侵犯专利权的行为，权利人主张该诱导者的行为属于民法典第一千一百六十九条规定的教唆他人实施侵权行为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二条** 对于被诉侵权人主张的现有技术抗辩或者现有设计抗辩，人民法院应当依照专利申请日时施行的专利法界定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  **第二十三条** 被诉侵权技术方案或者外观设计落入在先的涉案专利权的保护范围，被诉侵权人以其技术方案或者外观设计被授予专利权为由抗辩不侵犯涉案专利权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四条** 推荐性国家、行业或者地方标准明示所涉必要专利的信息，被诉侵权人以实施该标准无需专利权人许可为由抗辩不侵犯该专利权的，人民法院一般不予支持。  　　推荐性国家、行业或者地方标准明示所涉必要专利的信息，专利权人、被诉侵权人协商该专利的实施许可条件时，专利权人故意违反其在标准制定中承诺的公平、合理、无歧视的许可义务，导致无法达成专利实施许可合同，且被诉侵权人在协商中无明显过错的，对于权利人请求停止标准实施行为的主张，人民法院一般不予支持。  　　本条第二款所称实施许可条件，应当由专利权人、被诉侵权人协商确定。经充分协商，仍无法达成一致的，可以请求人民法院确定。人民法院在确定上述实施许可条件时，应当根据公平、合理、无歧视的原则，综合考虑专利的创新程度及其在标准中的作用、标准所属的技术领域、标准的性质、标准实施的范围和相关的许可条件等因素。  法律、行政法规对实施标准中的专利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二十五条**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且举证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对于权利人请求停止上述使用、许诺销售、销售行为的主张，人民法院应予支持，但被诉侵权产品的使用者举证证明其已支付该产品的合理对价的除外。  　　本条第一款所称不知道，是指实际不知道且不应当知道。  本条第一款所称合法来源，是指通过合法的销售渠道、通常的买卖合同等正常商业方式取得产品。对于合法来源，使用者、许诺销售者或者销售者应当提供符合交易习惯的相关证据。  **第二十六条** 被告构成对专利权的侵犯，权利人请求判令其停止侵权行为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基于国家利益、公共利益的考量，人民法院可以不判令被告停止被诉行为，而判令其支付相应的合理费用。  **第二十七条**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难以确定的，人民法院应当依照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要求权利人对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进行举证；在权利人已经提供侵权人所获利益的初步证据，而与专利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人民法院可以责令侵权人提供该账簿、资料；侵权人无正当理由拒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根据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认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  **第二十八条** 权利人、侵权人依法约定专利侵权的赔偿数额或者赔偿计算方法，并在专利侵权诉讼中主张依据该约定确定赔偿数额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九条** 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作出后，当事人根据该决定依法申请再审，请求撤销专利权无效宣告前人民法院作出但未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的，人民法院可以裁定中止再审审查，并中止原判决、调解书的执行。  专利权人向人民法院提供充分、有效的担保，请求继续执行前款所称判决、调解书的，人民法院应当继续执行；侵权人向人民法院提供充分、有效的反担保，请求中止执行的，人民法院应当准许。人民法院生效裁判未撤销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的，专利权人应当赔偿因继续执行给对方造成的损失；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被人民法院生效裁判撤销，专利权仍有效的，人民法院可以依据前款所称判决、调解书直接执行上述反担保财产。  **第三十条** 在法定期限内对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不向人民法院起诉或者起诉后生效裁判未撤销该决定，当事人根据该决定依法申请再审，请求撤销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但未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的，人民法院应当再审。当事人根据该决定，依法申请终结执行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但未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的，人民法院应当裁定终结执行。  **第三十一条** 本解释自2016年4月1日起施行。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相关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